

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규정

제정 2019.10.28

개정 2022.02.21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(이하 본 대학) 핵심 역량에 기반한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환류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'비정규 교육과정'이란 본 대학 정규교육과정과 연관되어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 및 대상)

- ①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비정규 교육과정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업무분장)

- ① 비정규 교육과정의 총괄적인 운영은 본 대학 교무처에서 담당하며,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아 비정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운영과 성과분석, 개선 계획을 총괄한다.
- ② 비정규 교육과정의 운영 분야와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
 1. 대학 전반의 비정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총괄기획 및 운영성과 및 환류 체계 관리 : 교무처
 2. 전공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: 스쿨 및 학과
 3. 대학 교양교육 목표기반 관련 프로그램 운영 : 교양교육원(리케이온)
 4. 기초 학습 및 핵심역량 진단 및 후속프로그램,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스쿨(학과) 전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: 관련 담당부서
 5. 진로 및 심리관련 검사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: 진로 및 심리관련 검사 및 관련 프로그램 담당 부서
 6.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: 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담당 부서
 7. 기초학습 및 인문·문화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: 기초학습 및 인문·문화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 부서
 8. 글로벌 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: 글로벌 역량강화 관련 프로그램 담당 부서
 9. 기타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: 관련 담당 부서

제5조 (비정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)

- ① 비정규 교육과정은 본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육목표 등에서 정한 인재상을 양성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

- ② 전년도 성과분석 결과 혹은 요구조사를 토대로 편성한다.
- ③ 비정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 - 1. 비정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
 - 2. 비정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년도 성과분석 혹은 요구 분석
 - 3. 핵심 역량 기반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
 - 4.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
 - 5. 비정규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
 - 6. 비정규 교육과정 결과보고
 - 7. 각 시행 부서별 비정규 교육과정 총괄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성과 분석

제6조(평가 및 환류)

- ①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에는 평가와 환류를 실시한다.
- ② 평가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기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계획 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며, 프로그램의 환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.
- ③ 환류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사항을 결정하여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에 반영한다.

제7조 (운영위원회)

- ①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하기 위하여 비정규 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.
 - 1. 본 대학 핵심 역량 기반 비정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비정규 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비정규 교육과정의 환류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- ③ 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1.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맡는다.
 - 2. 제 4조 2항에 명시한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한다.
 - 3.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- 4. 간사는 교무처 담당자가 맡는다.

부칙

(시행일) 위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자로 시행한다.